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인은 팔린 사람을 언젠가는 노무로부터 해방시켜주어야 하므로 그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러한 하인을 둔 주인은 그의 생명에 대해서 자의적인 권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를 손상시킬 수도 없었으며, 눈이나 이[齒]를 하나라도 잃게 만든 경우에는 그를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출애굽기」, 제21장).

제5장

재산*에 관하여

25. 자연의 이성에 따르면 인간은 일단 태어나면 자신의 보존에 대한 권리, 따라서 고기와 음료, 기타 자연이 생존을 위해서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가르친다. 또한 계시 [『성서』]에 따르면, 세계는 신이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후손]들에게 하사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를테면 다윗 왕이 신은 “땅을 사람들에게 주셨도다”(구약성서 「시편」, 제115장 제16절)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이 그것을 인류에게 공유물로 준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점을 가정하면 대체 어떤

* 제5장의 제목은 'Of Property'이다. 로크는 「두 번째 논고」에서 재산(property)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광의의 재산은 '생명, 자유, 자산(life, liberty, estate)'을 총칭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협의의 재산은 '경제적 재화'를 지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의미에서 '재산'은, 우리말의 소유(권)와 중첩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제5장에서 'property'는 소유권을 의미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국내 번역본은 제5장을 '소유권에 관하여'로 옮기는 것이 관행이다. 옮긴이 역시 제5장에서 경제적 재화로서 'property'를 소유권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겠지만, 제5장의 제목 자체는 일반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재산에 관하여'로 옮겼음을 밝혀둔다.

사람이 어느 사물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매우 난처한 처지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제시되기도 한다. 즉, 그 답변은 신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세계를 공유물로 주셨다는 가정에 입각해서 소유권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신이 나머지 후손들을 제외하고 오직 아담과 그의 직계 상속자들에게만 이 세계를 주었다는 가정에 따라 오직 한 사람의 보편적인 군주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신이 인류에게 공유물로 준 대지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그것도 공유자들 간의 명시적인 협정이 없이 가지게 되었는가를 밝혀보려고 시도하겠다.

26.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신 하느님은 또한 그들에게, 삶에 최대한 이득이 되고 편익에 봉사하도록 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주었다. 대지(the earth)와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부양과 안락을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과실과 대지가 먹여 살리는 짐승들은 자연적인 작용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자연적인 상태에 남아 있는 한, 그것들에 관해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인 지배권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주어진 이상, 그것들을 특정한 사람이 일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수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마땅하다. 인클로저(enclosure)*에 대해서 전혀 모르며 여전히 공유지를 빌려 쓰는 데 불과한 야생의 인디언의 경우, 그를 먹여 살리는 과일이나 사슴고기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데 유용한 것이 되려면, 먼저 그의 것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지 않는 그 자신의 일부, 그의 것이 되어야 한다.

27.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person)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엇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 왜냐하면 그 노동은 노동을 한 자의 소유물인 것이 분명하므로, 타인

*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로 둘러싸는 것.

이 아닌 오직 그만이, 적어도 그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유물들이 충분히 남아 있는 한, 노동이 첨가된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8. 떡갈나무 밑에서 자신이 주운 도토리나 숲속의 나무에서 딴 사과를 섭취한 사람은 확실히 그것들을 그 자신의 것으로 수취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도 섭취한 것이 그의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묻겠다. 언제부터 그의 것이 되었는가? 그가 소화했을 때? 아니면 그가 먹었을 때? 아니면 그가 삶아서 익힌 때? 아니면 그가 그것들을 집에 가져왔을 때? 아니면 그가 그것들을 주웠을 때? 그런데 그가 그것들을 처음으로 주워 모았을 때 그의 것이 되지 않았다면, 그 밖의 다른 어떤 행위도 그것들을 그의 것으로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한 노동이야말로 그것들과 공유물 간의 구별을 가져온다. 노동이 만물의 공통된 어머니인 자연보다 더 많은 무엇을 그것들에 첨가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그의 사적인 권리가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수취한 도토리나 사과에 대해서, 그는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류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할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속하는 것을 자신이 그렇게 수취하는 것은 강탈행위인가? 만약 그런 동의가 필요했더라면, 인간은 신이 모든 것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짚어죽었을 것이다. 협정에 의해서 공유지로 남아 있는 것에서 소유권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공유물의 어떤 부분이든 그것을 취해서 자연이 남겨둔 상태로부터 꺼내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한 일이 없다면 공유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떼어 가지는가는 모든 공유자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의 말이 뜯어먹는 풀, 내 하인이 떼어온 잔디의 뗏장,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채취한 광물은 다른 사람의 양도나 동의 없이도 나의 소유물이 된다. 나 자신의 것인 노동이 그것들을 원래의 공유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나의 소유권을 그것들에 설정한다.

29. 만약 사람들이 공유로 주어진 것의 일부분을 취득하는 데 모든 공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자식들이나 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나 주인이 각자에게 특정 부분을 할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공유로 준 고깃덩어리를 자를 수 없게 될 것이다. 샘에 흐르는 물은 모두의 것이지만, 주전자에 있는 물은 그 물을 담은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그의 노동이 그 물을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속한 공유물이었던 자연의 수중에서 꺼내어 그의 것으로 수취하게 만든 것이다.

30. 이러한 이성의 법에 따라 사슴은 그것을 죽인 저 인디언의 것이 된다. 이전에 사슴은 모든 이의 공통된 권리였지만, 이제 그것에 그의 노동을 첨가한 사람의 재물이 되는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이른바 문명화된 인류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온 사람들, 곧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정법을 제정하고 증가시켜온 사람들 간에도 소유권의 시작에 관한 이러한 원초적 자연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법에 따라 어떤 사람이 아직도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남아 있는 저 거대한 대양에서 잡은 물고기 또는 거기서 추출한 어떤 용연향(龍涎香)*은, 그것을 자연이 남겨둔 공유상태에서 꺼낸 노동으로 그러한 수고를 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이 사냥을 하고 있는 산토끼는 그것을 쫓고 있는 사람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산토끼는] 여전히 공유물로 간주되고 있는 야생동물이고 어떤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잡기 위해서 그것에 그토록 많은 노동을 지출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산토끼를 공유상태인 자연상태로부터 분리시켜 소유물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1.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법하다. 만약 대지의 도토리나 다른 과실 등을 주워 모으는 것이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준다면,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만큼 많은 양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라는 반론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겠다. 우리에게 이런 수단을 통해서 소유권을 부여하는 동일한 자연법이 또한 그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디모데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제6장 제17절)라는 구절은 영감에 의해서 확인된 이성의 목소리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는가? 즐길 수 있는 만큼. 어느 누구든지 그것이 썩기 전에 삶에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다. 곧 그가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로 확정할 수 있는 만큼 주셨던 것이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그의 몫을 넘어서며, 다른 사람의 몫에 속한다. 하느님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썩히거나 파괴해버리도록 하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세계에는 자연이 제공하는 것이 풍성하게 존재했고 그 사용자는 적었다. 그리하여 한 인간이 자신의 근면으로 그 풍성함의 일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될 정도로 그것을 독점하는 경우란 거의 없었다. 특히 이성에 의해서, 그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정도로 정해진 한계를 지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렇게 설정된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여지란 거의 없었던 것이다.

32. 그러나 이제 와서는 소유권의 주된 대상이 대지에서 나오는 과실 또는 거기 사는 짐승들이 아니라 그것들이나 다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대지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전자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획득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한 인간이 개간하고 파종하고 개량하고 재배하고, 그 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토지가 그의 소유이다. 그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이를테면, 그것을 공유지로부터 떼어내어 울타리를 친 셈이다. 이에 대해 모든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한

* 고래의 뇌에서 짜낸 향료.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공유자인 모든 인류의 동의가 없이는 토지를 수취하거나 울타리를 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하는 반론도 있겠지만, 그 반론이 그의 권리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느님이 세계를 모든 인류에게 공유로 주셨을 때, 그는 인간에게 또한 노동할 것을 명했고, 인간은 자신이 처한 궁핍한 상황으로 인해서 노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하느님과 인간의 이성은 인간에게 대지를 정복할 것, 곧 삶에 이익이 되도록 대지를 개량하고 대지에 그 자신의 것인 그의 노동을 첨가할 것을 명했다. 하느님의 이러한 명령에 복종하여 대지의 일부를 경작하고 씨를 뿌린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소유인 무엇인가를 그 토지에 첨가한 셈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 권리(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33. 이런 식으로 토지를 개량함으로써 그 일부를 수취하는 것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전히 충분한 좋은 토지가 남아 있고, 아직 토지를 가지지 못한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울타리를 치는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가 적게 남아 있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남겨놓은 사람은 전혀 아무 것도 취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물을 많이 퍼마셨다고 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갈증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강물이 전과 다름없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든 물이든 둘 다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라면 사정은 전적으로 동일하다.

34. 신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었다. 그러나 신은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이익과 최대한의 편익을 위해서 세계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공유로 그리고 개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신의 의도라고 상정할 수는 없다. 신은 세계를 근면하고 합리적인 자들이 사용하도록 주었지 (그리고 노동은 그것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 시끄럽고 싸우기 좋아하는 자들의 변덕과 탐욕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취득한 것 이상으로 개간하기에 충분한 양의 토지가 자신에게 남겨진 사람은 불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미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개간된 것에 참견해서도 안 된다. 만약 불평한다면, 그는 자신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타인이 수고한 대가를 원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아울러 그러한 태도는 신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노동하도록 그에게 준 토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토지는 타인이 이미 소유한 것 이상으로, 그가 처분하기 힘겨울 정도로 그리고 그 자신의 근면함이 다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35. 영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는 일정한 정부 아래서 화폐를 매개

로 하여 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 곳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공유지의 일부분을 다른 모든 동료 공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울타리를 치거나 자기의 소유로 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협약, 곧 위반해서는 안 되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공유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유지이지만, 모든 인류에게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나라 또는 이 교구의 공동재산이다. 게다가 그렇게 울타리를 친 후에 남은 땅은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그들 모두가 공유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 그랬던 것만큼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세계의 거대한 공유지에 최초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을 때는 사정이 매우 달랐다. 인간을 지배하는 법은 토지의 수취를 오히려 권장하는 편이었다. 신은 인간에게 노동을 명했고, 인간은 궁핍으로 인해서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노동을 투하한 곳이 어디든 그곳은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그의 재산이었다. 그러므로 대지를 개간하거나 경작하는 것과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전자는 후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했다. 그리하여 신은 인간에게 [대지를] 정복[개간]하라고 명함으로써 정복한 만큼 수취할 수 있는 권능(authority)을 주었다. 그리고 노동은 물론 작업을 할 물자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삶의 조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되었다.

36. 자연은 소유권의 한도를 인간의 노동의 정도와 삶의 편익에 따라서

적절하게 규정한다. 어떤 사람의 노동도 모든 것을 정복하거나 수취할 수는 없다. 또한 그가 향유하여 소비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이웃에 피해가 될 정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의 이웃은 (타인이 그 자신의 땅을 취한 후에도) 여전히 수취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양호한 그리고 충분한 소유물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도는 모든 사람의 소유를 매우 적절한 정도로, 곧 태초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 자신이 수취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경작할 땅이 없어서 궁핍에 처하기보다는 그들의 동료로부터 이탈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에 더 많이 처해 있었다. 오늘날에는 세계가 사람들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최초에 아담이나 노아의 자식들이 세계에 정주하게 되었을 때의 한 인간이나 한 가족을 상상해보면 된다. 그가 아메리카 내륙의 빈 땅에 정착한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앞서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가 취할 수 있는 소유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가 취한 소유물로 여타 인류가 피해를 입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 사람의 침입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비록 인간의 종족이 이제는 세계의 구석구석에 퍼져 있고, 태초에 얼마나 되던 인구 수를 엄청나게 초과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아니, 토지의

크기란 노동 없이는 별로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페인 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용한다는 사실 이외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토지를 별다른 방해 없이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이 인정된다 고 들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토지의 개간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주민들은 자신들이 그[토지를 개간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소홀히 취급되어 버려진 토지에 자신의 근면을 바쳐서 그들이 원하던 곡물의 수확량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히 대담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화폐를 발명하고 묵시적 합의를 통해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동의를 통해서) 대규모의 재산과 그것에 대한 권리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재산에 관한 동일한 규칙, 곧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소유해야 한다는 규칙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세계에는 현재 거주민의 두 배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땅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로 이내 궁핍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밝히겠다.

37. 태초에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고, 이에 따라 사물의 본래적 가치는 오직 인간의 삶에 대한 유용성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 인간은 아직 마모되거나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황금색의 작은 금속 조각이 커다란 고깃덩어리 또는 곡물 한 더미만큼 가치를 가진다고 합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자연이 제공한 것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하지만 예전과 다름없는 풍성함이 항상 남겨진 곳에서 근면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자신의 노동으로 토지를 수취하는 사람은 인류의 공동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논점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을 부양하기 위해서 [공유지에서 떼어내어] 울타리를 쳐서 경작한 1에이커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똑같은 비율도를 가겼지만 개간되지 않은 채 공유지로 방치된 1에이커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양의 10배 이상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로 막은 10에이커의 토지로부터 대단히 많은 삶의 편익을 얻는 사람은 자연에 방치된 100에이커의 토지로부터 동일한 편익을 얻는 자보다 실로 90에이커의 토지를 인류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놀고 있는 공유지 100에이커의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식량을 노동을 통해서 10에이커의 토지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개간된 토지와 미개간된 토지의 생산물의 비율을 10 : 1로 잡음으로써 매우 낮게 평가했는데, 실제로는 그 비율이 거의 100 : 1에 가깝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천연림의 경작되지 않은 황무지에 개간, 개량, 농경 없

이 자연에 방치된 1,000에이커의 토지가 궁핍하고 가난한 원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삶의 편익이, [영국의] 데본셔에서 동일한 비옥도의 잘 개간된 100에이커의 토지가 제공할 수 있는 것만큼 많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토지의 수취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가급적 많은 야생의 과일을 모으거나, 많은 짐승들을 죽이거나, 사로잡거나, 길들인 사람은 자연발생적인 생산물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함으로써 자연이 방치한 상태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을 가하는 등 노고를 들인 사람이다. 그는 그런 행위로써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그가 소지하게 된 것들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상하게 되면, 곧 그가 소비하기 전에 과일이 썩거나 사슴고기가 상하게 되면, 그는 공통의 자연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는 이웃의 땅을 침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에게 삶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권리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8. 동일한 기준이 토지의 소유에도 적용되었다.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개간하고, 수확하고, 저장하고, 상하기 전에 사용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고유한 권리이다. 그가 토지를 올타리로 둘러싸서 가축을 기르고 생산물을 사용하면, 그 가축과 생산물 역시 그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올타리를 친 부분의 잔디가 땅 위에서 썩거나 그가 올타리를 쳤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토지는 여전히 황무지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가 심은 나무에서 열린 과일이 채취되어 저장되지 않고 상해버린다면, 그것

은 다른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초에 카인은 그가 개간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땅을 취득하여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고, 그럼에도 아벨이 양을 키우기에 충분한 만큼 남겨둘 수 있었다. 단지 몇 에이커의 땅만으로도 두 사람의 소유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구 수가 늘어나고 근면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산이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의 소유물은 그들의 필요와 더불어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를 결성하고 서로 모여 살며 도시를 건설하기 이전에는 아직 그들이 활용한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동의를 통해서 그들은 상이한 영토적 경계를 확정하게 되었고 그들과 이웃 간의 경계에 관해 합의하게 되었으며, 그들 내부적으로는 법을 통해서 동일한 사회 성원들의 소유권을 확정지었다. 왜냐하면[곧바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최초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여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에서도, 심지어 아브라함이 살던 비교적 후세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자산인 가축의 폐를 끌고 이곳저곳 자유롭게 떠돌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이방인이던 나라에서 떠돌아다녔다. 따라서 적어도 대부분의 토지가 공유로 남아 있었고, 주민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사용하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 그들의 가축을 함께 방목할 충분한 공간이 없어졌을 때, 그들은 「창세기」(제13장 제5절)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던 것처럼 동의를 통해서 목초지를 서로

분리하여 그들의 마음에 드는 곳으로 확장해 나갔던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에사오(Esau)는 아버지 및 형제로부터 떠나 세일 산에 거주하게 되었다(「창세기」, 제36장 제6절).

39.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담이 다른 모든 사람을 배제한 채 전 세계에 대해 사적인 지배권이나 소유권을 가졌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제 그만 두자. 그것은 입증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그런 가정에서 비롯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가 모든 인간들에게 공유로 주어졌다고 가정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인간이 노동을 통해 세계의 구획된 땅들에 대해서 사사로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거기에 권리에 대한 의혹이나 분쟁의 여지란 있을 수 없었다.

40. 아마도 고찰하기 전에 생각했을 법한 것처럼 [25절의 논의를 상기시키는 구절], 이제 노동을 통해 발생한 소유권이 토지에 대한 공동의 소유권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사물에 상이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노동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든 담배나 사탕수수를 심고, 밀 또는 보리의 씨를 뿌린 1에이커의 토지와 아무런 경작도 없이 방치된 동일한 크기의 공유지 간의 차이를 고려해보라. 그러면 그는 노동에 의한 개량이 훨씬 더 커다란 가치의 뭉을 차지한다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인간의 삶에 유용한 토지 생산물 중에서 10분의 9가 노동의 결과라고 말해도 그것은 대단히 낮추어 잡은 계산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심지어 사물을 우리의 용도에 이바지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하고 투입된 요소 중에서 순전히 자연에 속하는 것과 노동에 속하는 것을 계량해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100분의 99가 전적으로 노동에서 발생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1. 아메리카인들의 몇몇 나라들보다 이 점을 더 명백히 입증해주는 사례들은 없다. 이들 나라들은 땅은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만 삶의 편익에서는 빈곤하다. 자연은 이 나라들에게 다른 어느 민족들보다 더 풍성한 자원, 곧 식품, 의복 및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것을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마련해주었지만, 그들은 노동을 통해서 그 땅을 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향유하는 편익의 100분의 1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기서는 광대하고 비옥한 영토의 왕이 영국의 일용 노동자보다 의식주에서는 훨씬 궁핍하게 살고 있다.

42. 이 점을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생활의 일상적인 필수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가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인간의 근로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얻게 되는가를 따져보도록 하자. 빵, 포도주, 직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서 풍부하게 있다. 그렇지만 노동이 우리에게 그같이 유용한 필수품들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도토리, 물 그리고 잎사귀나 가죽이 우리의 빵, 음료 및 옷으로 남아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빵이 도토리보다, 포도주가 물보다, 직물이나 비단이 잎사귀, 가죽 또는 이끼보다 얼마나 가치가 더 나가든, 그것은 전적으로 노동과 근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들 중 한편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한 식품과 옷이며, 다른 한편은 우리의 근면과 노고가 우리에게 마련해준 것이다. 그런데 후자가 전자를 그 가치 면에서 초과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해보면, 노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향유하는 사물의 가치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몫을 창출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자원을 생산하는 땅은 얼마나 적은 가치만을 인정받을 뿐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 사이에서도 전적으로 자연에 맡겨진 땅, 곧 목장화(牧場化), 개간, 경작의 면에서 아무런 개량이 이루어 지지 않은 땅은 너무나 적은 가치만을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듯이 ‘버려진 땅(waste)’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땅에서 얻는 이득이 거의 무에 가까울 만큼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왜 지배하는 땅의 크기보다 인구 수가 많은 것이 더 선호되는지를 보여주며, 또 땅(lands)*의 확대와 그것의 올바른 사용이 통치의

커다란 기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명하고 신처럼 유능한 군주, 곧 확립된 자유의 법을 통해서 인류의 정직한 근로를 권력의 탄압과 당파의 편협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장려하는 군주는 머지않아 이웃 나라들에게 매우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시사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내친 김에 나온 말이다. 기왕의 논의로 돌아가자.

43. 밀 20부셸(bushel)을 생산하는 여기 [영국에 있는] 1에이커의 땅과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면 동일한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아메리카 1에이커의 땅은 의심의 여지없이 자연적으로 동일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전자로부터 1년에 얻는 이득은 5파운드에 달한다. 반면에 후자로부터 얻는 이득은, 인디언이 그 땅으로부터 얻는 모든 이득을 여기서 가치를 매겨 판다고 해도, 아마 페니 한 푼의 가치도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말하건대, 기껏해야 1,000분의 1의 가치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에 최대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이며, 그것이 없다면 토지는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에게 유용한 모든 산물의 가치는 대부분 노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밀을 심은 1에이커의 땅에서 나오는 모든 밀집, 격 및 빵은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땅 1에이커가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생산

* 문맥상 ‘땅 또는 토지(lands)’가 아니라 노동력(또는 인구: hands)의 오기(誤記)라는 해석론도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고 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로크가 강조하는 바는 영토의 확장 그 자체가 아니라 개량과 경작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얻는 땅 또는 토지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John Locke,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and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ed. by J. W. Gough, Third Edition (Oxford : Basil Blackwell, 1976), p. 23, fn. 1;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by Peter Laslett, Second Edi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p.315의 각주를 참조하라.

하며, 그것은 모두 노동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빵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작자의 수고, 수확하는 자와 타작하는 자의 노고 그리고 제빵공의 땀뿐만 아니라 황소를 길들이 사람들, 철과 광석을 캐내어 제련한 사람들, 쟁기, 제분소, 화덕 등 곡물의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빵이 될 때까지 필요한 많은 다른 도구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를 베고 다듬은 사람들의 노고가 모두 노동으로서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연과 대지는 그 자체로서는 단지 거의 무가치한 재료를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 조각의 빵이 소비될 때까지 근로를 통해 제공되고 활용된 모든 물자들을 우리가 추적한다면, 그것은 실로 사물들의 기이한 목록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철, 나무, 가죽, 나무껍질, 목재, 돌, 벽돌, 석탄, 석회, 옷, 염색약, 역청, 타르, 둑대, 밧줄, 배— 노동자가 사용하는 모든 상품을 작업장에 가져오는—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 등 그 목록은 너무 길어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44. 이 모든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은 명백하다. 즉 자연의 사물들은 공유로 주어지지만, 인간은 (그 자신의 주인으로서, 곧 그 자신의 인신, 행위 및 노동의 소유주로서) 그 자신 안에 소유권의 주된 기초가 되는 것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발명과 기예를 통해서 삶의 편익을 개선했을 때, 그가 자신을 부양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의 대부분은 전적으로 그의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공유물이 아니다.

45. 그러므로 태초에는 누구나 공유물이던 것에 기꺼이 노동을 지출하면 어디에서나 노동이 그것에 소유권을 부여했다. 당시에는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공유물로 줄곧 남아 있었다. 처음에 인간은 대부분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그들의 필요에 제공하는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세계의 일정 지역에서, (곧 화폐의 사용과 더불어 인구 및 가축의 증가로 인해서) 토지가 희소해지고 그 결과 상당한 가치를 가지게 된 곳에서 몇몇 공동체들은 그들 간에 상이한 영토의 경계를 확정하게 되었으며, 그들 내부에서도 법으로 그 사회의 사인(私人)들의 소유권을 규제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노동과 근면을 통해 발생한 소유권을 협정과 합의로 매듭짓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몇몇 나라와 왕국 사이에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각기 다른 나라들이 소유한 땅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함으로써 맹약들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맹약들은 공동의 동의를 통해 그들이 원래 다른 나라들의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인 공유권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서 지구상의 상이한 지역과 지방에서 그들 간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여타의 인류처럼 공통된 화폐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곳에서는 광대한 땅이 여전히 황무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것이다. 그 땅은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으며, 따라서 여전히 공유물로 남아 있다. 물론 이러한 일은 화폐의 사용에 동의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46. 인간의 삶에 참으로 유용한 것들 그리고 오늘날 아메리카인들이 그런 것처럼 태초에 세계의 공유자들이 생존을 위해 찾던 것들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예컨대 사용해서 소비하지 않으면 저절로 썩거나 상하는 것들이었다. [이와 달리] 금, 은 및 다이아몬드는 실제 용도나 삶을 부양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공상이나 합의를 통해서 가치가 부여된 것들이다. 이제 자연이 공유물로 제공한 그처럼 유용한 물건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이미 말한 것처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노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가 근면을 통해 자연이 놓아둔 상태로부터 변형하여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의 것이다. 100부셸의 도토리나 사과를 모은 자는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그것들은 모으자마자 그의 재물이다. 그는 상하기 전에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몫 이상을 취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셈이 된다. 그리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장하는 것은 부정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소유물이 상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는 그것들을 이용한 셈이다. 만약 그가 또한 1주일이 지나면 썩을 것 같은 자두를 주고 1년 내내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견과를 받았다면, 그는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은 셈이다. 그의 수중에서 어느 것도 무용하게 상하지 않는 한, 그는 공동의 자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재물의 일부분을 파괴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한번 만약 그가 견과를 주고 마음에 드는 색깔의 금속 한 조각을 받는다면, 또는 조개껍질을 받고 그가 키우던 양을 주거나, 반짝이는 자갈 또는 다이아몬드를 받기 위해서 양모를 준다면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자기 곁에 평생 동안 보관하고 있다면, 그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셈이며 따라서 그는 그러한 내구재(耐久財)들을 그가 원하는 만큼 많이 쌓아놓을 수 있다. 그가 정당한 소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그가 가진 소유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상해서 무익한 것이 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47. 그런 식으로 화폐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화폐는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은 상호간 합의를 통해서 참으로 유용하지만 썩기 쉬운 생활용품과 교환하여 화폐를 받게 되었다.

48. 근면함의 상이한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상이한 크기의 재산을 가지는 것처럼, 이 같은 화폐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데 세계의 다른 지역과 전혀 교역을 하지 않는 고립된 섬을 상상해보자. 거기에 사는 사람은 단지 100가구 정도이지만, 양, 말, 암소 등 유용한 동물들, 영양분이 많은 과일 그리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의 10만 배나 되는 곡식을 능히 산출할 수 있는 땅이 있다. 그러나 섬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너무 흔하거나 아니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근로를 통해서 생산한 것이든 또는 다른 이들과 물물 교환하여 유용하지만 쉽게 상하는 물품을 얻기 위해 생산한 것이든, 가족의 사용과 넉넉한 소비에 충분한 양을 넘어서 그의 소유물을 확장할 이유가 있겠는가? 무엇이든 영구적이며 희소한 그리고 저장해둘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면 인간은 비옥한 토지를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토지의 소유를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잘 경작되어 있고 가축들이 잘 번식하고 있는 1만 또는 10만 에이커의 좋은 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세계의 다른 지역과 생산물을 파는 교역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다면 인간이 왜 그것을 소중히 여기겠는가? 그런 땅은 올타리를 쳐서 막을 가치가 없으며, 우리는 그가 자신과 가족의 생활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여분이 무엇이든 그것을 다시 야생상태인 자연의 공유지에 방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49. 이처럼 태초에 모든 세계는 아메리카와 같았다. 지금의 아메리카보다 더욱더 아메리카적이었다. 화폐와 같은 것은 어느 곳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이웃 사람들 중에서 화폐의 용도와 가치를 가진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곧 바로 그의 소유물을 확대해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0. 그러나 금이나 은은 식품, 의복 및 운송수단과 비교해볼 때 인간의 삶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비록 일반적으로 가치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는 척도는 노동이지만) 가치를 가질 뿐이다. 이제 사람들은 잉여생산물을 주고 금과 은을 받음으로써 한 인간이 [땅의]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땅을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묵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발견했고, 그 결과 토지를 불균등하고 불평등하게 소유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 확실하다. 이 금속들은 소유자의 수중에서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적 소유물의 불평등과 같은 사물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인간이 사회의 경계 밖에서 아무런 협정도 없이 단지 금과 은에 가치를 부여하고 화폐의 사용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일정한 정부 아래서는 법이 소유권을 규정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명문의 법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51. 그러므로 어떻게 노동이 자연의 공유물에 대해서 최초로 소유의 자격을 부여하고, 어떻게 용도에 따른 소유물의 소비가 그 한계를 설정하게 되었는지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소유의 자격에 대해서 말다툼할 이유나 노동이 부여한 소유물의 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권리와 편익이 조화롭게 부합했다. 인간은 그가 노동을 지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노동할 유인이 없었다. 이로 인해서 소유의 자격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의 여지도 없었다. 어떤 부분이든 어떤 사람이 떼어낸 것은 쉽게 알 수 있었고 그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이 떼어내거나 그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취득한다는 것은 부정직할 뿐만 아니라 무익한 일이었던 것이다.

제6장

부권에 관하여

52. 이와 같은 성질의 논고에서,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단어나 명칭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은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아마도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권(父權)이라는 이 단어가 아마도 그런 것처럼, 예전의 오래된 단어들이 사람들에게 쉽게 오해를 유발할 때,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는 것이 아마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부권이라는 단어는 자식에 대한 양친의 권력을 마치 어머니는 아무런 뜻이 없는 것처럼, 즉 전적으로 아버지에게만 귀속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이나 신의 계시에 비추어보면 어머니 역시 평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이 장이, 부권을 양친의 권력으로 불러야 마땅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이유를 제공한다. 자연과 생식의 권리가 자식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든, 자식들이 그러한 의무의 공통된 근원인 양친에게 평등하게 구속된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법이 명문(明文)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123. 만약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토록 자유롭다고 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체 그는 왜 그러한 자유와 결별하는 것일까? 왜 그는 이 같은 절대적 지배권(empire)을 포기하고 자신을 타인의 권력의 지배와 통제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상태에서 그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왕이고 모든 사람이 그와 평등하며, 그들 대부분이 형평과 정의의 엄격한 준수자들이 아니므로 그가 이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향유가 매우 불안전하고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그는 비록 자유롭지만 두려움과 지속적인 위험으로 가득 찬 이 상황을 기꺼이 떠나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가 이미 결합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또는 그럴 생각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의 생명, 자유, 자산(estate) — 내가 ‘재산(property)’이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부르는 것 — 의 상호 보존을 위해서 사회를 결성하려고 하거나 기꺼이 사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124. 그러므로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 정부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자 하는 가장 크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연상태에는 이를 위한 많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첫째, 자연상태에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인 법, 사람들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수용되고 인정된, 확립되고 널리 알려진 법이 없다. 즉, 비록 자연법이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 법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이기 때문에, 자연법을 자신들이 관련된 특정한 사건에 적용할 때 자신들을 구속하는 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125. 둘째, 자연상태에는 확립된 법에 따라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널리 알려진 무사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법의 재판관이자 집행자인데, 인간은 자신에게 편파적이

므로 다른 사람들의 사건인 경우에는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태만하기 십상이고,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격정이나 복수심으로 극단으로 치닫거나 흥분하기 십상이다.

126. 셋째, 자연상태에는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서 지원해주고 또 그 적절한 집행을 확보해주는 권력이 종종 결여되어 있다. 부정의를 저지른 자들은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 할 수만 있다면 무력으로라도 저항하여 그들의 부정의를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저항 때문에 많은 경우에 처벌은 위험한 일이 되며, 그것을 시도하는 자들이 빈번히 파멸에 빠지기도 한다.

127. 그리하여 인류는 자연상태에 따르는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동안 단지 열악한 상황에 시달리게 되므로 급기야는 사회에 들어가려고 서두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잠시라도 함께 이러한 상태에서 사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들이 거기서 당면하게 되는 폐단, 곧 타인의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가진 권리이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하게 행사됨으로써 생기는 폐단으로 인해 그들은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성역으로 도망가며 거기서 그들 재산의 보존을 꾀한다. 바로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 기꺼이 자신의 처벌권을 포기하여 그것이 그들 중에서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행사되도록 그리고 공동체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

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합의하는 규칙에 따라서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와 사회 그 자체는 물론 입법권과 집행권 양자의 본래의 권리와 기원을 볼 수 있게 된다.

128.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순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외 하더라도 두 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자연법이 하용하는 한도에서 인간이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는 권리이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자연법에 의해서 그와 나머지 모든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하나의 사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의 부패와 사악함이 없었더라면 그 밖의 어떤 다른 사회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람들이 이처럼 위대하고 자연적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좀 더 작고 분열된 사회들(associations)로 결합할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가진 또 다른 권력은 자연법을 위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두 가지 권력을 인간은 그가 사적(私的)인 사회—만약 내가 그렇게 불러도 무방하다면—또는 특정한 정치적 사회에 가입하거나 여타 인류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국가를 형성할 때 포기하는 것이다.

129. 첫째의 권리, 곧 인간은 자신과 여타 인류를 보존하는 데 적합하다

고 생각한 바를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하는데, 이는 그 자신과 그 사회의 여타 사람들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만큼 사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규율되도록 하기 위해 포기한 것이다. 사회의 법은 많은 면에서 그가 자연상태에서 누리던 자유를 제약한다.

130. 둘째로, 그는 처벌권을 전적으로 포기하며, 사회의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회의 집행권을 돋는 데 그의 자연적 권리(이전에 그가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 권위에 의거해서 자연법의 집행을 위해서 사용하던)을 사용한다. 이제 공동체 전체의 힘을 통한 보호는 물론, 동일한 공동체에 있는 타인의 노동, 조력 및 교제로부터 많은 편리함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상태에 처하게 됨에 따라 그는 사회의 선(善), 번영 및 안전에 필요한 만큼 자신을 부양하는 데 사용하던 자연적 자유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사회의 다른 성원들도 내놓기 때문에 단순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것이다.

131.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종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오직 행하는 것이다(왜냐하면 어떠한 이성적 피조물도 현재보다 더 나쁘게 만들 의도로 그의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한다고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의 권력 또는 사회

에 의해서 구성된 입법부의 권력이 공동선을 넘어서까지 확대된다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다. 그 권력은 자연상태를 그토록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상술한 세 가지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보장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누구든 국가의 입법권이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는 즉흥적인 법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지고 확립된 일정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는 또한 무사공평한 재판관을 임명하여 그러한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물리력을 국내에서는 오직 그러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 사용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고 침입이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인민의 평화, 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